등록번호	의회사무국-7279
등록일자	2015.12.29.
결재일자	2015.12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정홍보팀장	의회사무국장	부의장	의장	
황미숙	최동명	정옥진	홍길식	12/29 류상호	
협 조					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참관에관한규정 개정계획

의회사무국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
참 관 에 관 한 규 정 개 정 계 획

「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('14.8.7시행)」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·시행하고 있는 참관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기재사항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구민불안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

Ⅰ 개정근거

○ 자치법규 등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, 증서 등 일제정비 요망 (전산정보과-12453호, 2015.10.23)

※ 2016. 1. 1일부터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금지
☞위반시 과태료부과

Ⅱ 개정이유

○ 2014년 8월 7일 개정·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어,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

Ⅲ 개정내용

○ **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개정**

-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○ **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**

Ⅴ 행정사항

○ 규정 발령일자 : 2015. 12. 30. (구보게재일)

○ 구보게재 의뢰 : 홍보담당관

○ 자치법규 개정사항 통보 : 정책기획담당관, 전산정보과

붙임 : 개정규정안, 신구조문대비표, 관계법령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2014년 8월 7일 개정·시행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어,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개정

나.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규정 제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」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」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는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 ”의회“라 한다)”라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토요일오후”는 “토요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2”는 “별표1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참관대상의 “특별위원회”는 “위원회회의실”로 하고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: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	제명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……
제5조(참관의 허가, 일시 등) ①~②(생략) ③참관일시가 "토요일 오후"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본회의 등이 개의 중일 때에는 참관할 수 없다. ④~⑤(생략)	제5조(참관의 허가, 일시 등) ①~②(생략) ③…… "토요일", …… ④~⑤(생략)
제6조(참관안내 및 경로) ①참관안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"별표2"에 의한 경로에 따라 행한다. ②~③(생략)	제6조(참관안내 및 경로) ①…… "별표1"에 …… ②~③(생략)
〔별지 제1호서식〕	〔별지 제1호서식〕

관 계 법 령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〔시행 2015.7.24.〕〔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[1]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---

1)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